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3687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9. 11.

판 결 선 고 2018.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9,140,3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8. 플라스틱탱크,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redacted]시 [redacted]구 B에 소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26.부터 2017. 6. 19.까지 [redacted]시 C 토지 등을 취득하고(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에게 취득세 등으로 합계 129,525,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설립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가 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17. 10. 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9. [redacted]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redacted]도지사는 2018. 1.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는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법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국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지방세인 취득세 등의 면제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redacted]시 [redacted]구 D 지상 건물 등을 취득할 당시 스스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상위 기관인 [redacted]도지사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원고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업종을 달리하고, 사업장 소재지, 주식보유 현황 및 임직원 현황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E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률유보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1.부터 2015. 10. 22.까지 [redacted]시 [redacted]구 D 및 그 지상 건축물 등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2015. 9. 1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위 건축물 등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 [redacted]시장은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 이에 원고가 [redacted]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redacted]도지사는 2017. 5. 16. 이를 채택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3) 그러나 피고가 2015. 9. 16.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하였을 당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매출액과 E와의 유사 매출처 및 임·직원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6. 12. 16.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이상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취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는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납세자에게 통보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통지된 내용에 뒤따를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게 하고, 이를 검토한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지를 한 과세관청에 그 적부여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행해지는 과세처분 전 통지,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관련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의 성격은 심의기관으로서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도 하위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2, 4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와 E의 대표자, 주식보유현황, 업종정보 등 법인 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설립 후 원고와 E의 매출액 현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E의 각 매출처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2015년 2기 매출처 중 45개, 2016년 1기 매출처 중 56개, 2016년 2기 매출처 중 46개의 매출처가 E의 2015년 1기 매출처와 동일하고, 위 기간 원고의 매출처 중 E의 매출처(총 132개)와 중복되는 곳은 총 79개에 달한다.

라) E는 2015. 11. 25.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현재 E는 원고와 인수합병되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사항은 원고 홈페이지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원고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해 둔 바 있다.

마) E에서 근무했던 임직원 17명 중 5명이 2015. 11.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E가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원고를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는 F으로, F은 당시 E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50%의 주식을 소유하며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② 원고가 E의 인력을 채용하고, E의 홈페이지에 원고와의 관계가 홍보되어 있고 원고의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이 E가 수행한 사업과 연속되거나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유력한 징표이다.

③ 원고가 2014년경 설립됨과 동시에 E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에 상응하여 원고의 매출은 상승하였다. 원고의 매출이 2015년 이후로 보다 급격히 상승하여 2016년경에는 기존 E의 매출을 초과하고 있긴 하나 이를 원고의 창업으로 인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매출처, 주업종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업종의 분류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원고와 E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은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분류번호 22232 포장용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에 해당한다.

⑤ 사업자등록증상 원고의 업태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수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E의 업태와 일부 다르긴 하나, 여전히 주업종은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으로 E의 기존 주업종과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업종 외에 부동산 임대업 등을 추가로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는 생산, 고용 등 경제에서 핵심적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해 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와 다른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정종건

판사 최유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별지 1]

연번	취 득 내 역		취득원인	취득일	취득가액
1		(토지 16,709㎡)	매매	2014.12.26.	885,000,000
2		(토지 2,503.5㎡)	매매	2015.1.6.	132,500,000
3		(지목변경 373.5㎡)	지목변경	2015.9.8.	52,290,000
4		(지목변경 2,405㎡)	지목변경	2016.1.4.	349,446,500
5		(건축물 1,535㎡)	매매	2016.6.13.	800,550,000
6		(건축물 339.3㎡)	매매	2016.6.13.	427,890,000
7		외 1필지 (2,778.5㎡)	증여	2017.6.19.	434,339,650
합계	7건				3,082,016,1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별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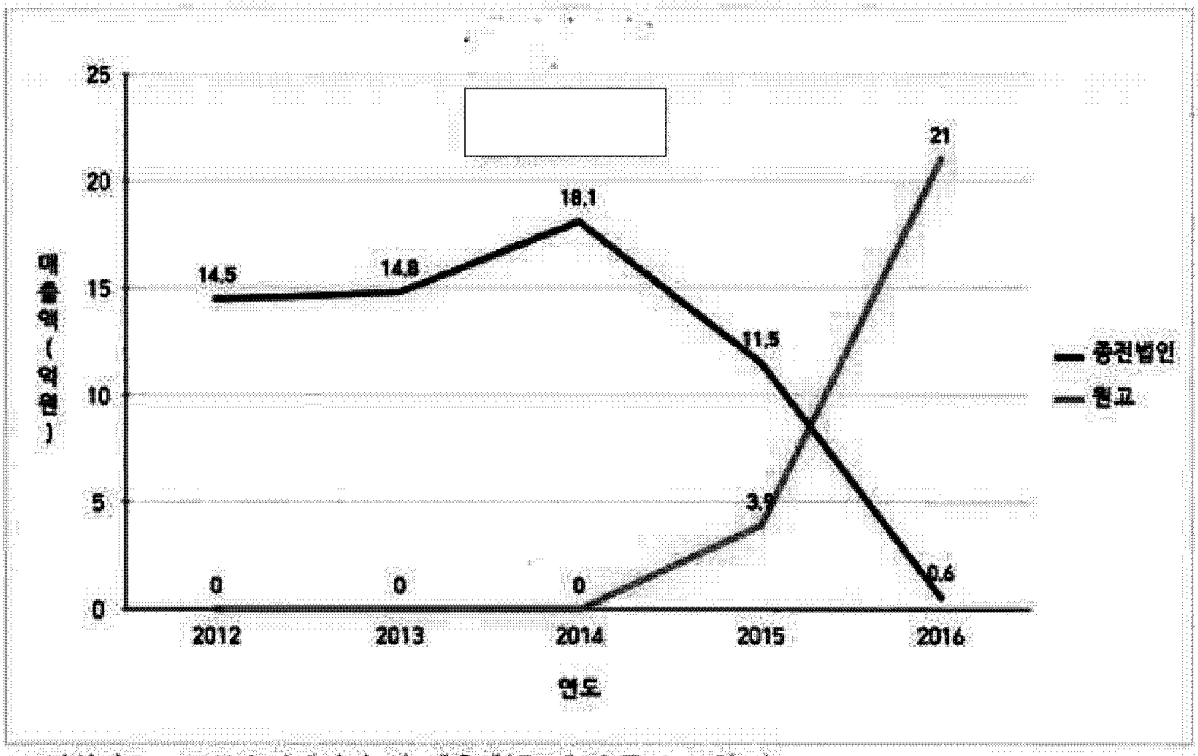
○ 법인 현황

법인명		원고	종전 법인
상 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상 태		계속사업자	계속사업자
개업일		2014. 8. 8.	2001. 11. 13.
본점		[redacted]시 [redacted]구 []	[redacted]시 []
지점		-	[redacted]시 [redacted]구 [] []
대표자		[] (당초 []에서 변경됨)	[]
주식보유현황		[] 100%	[] 60%, [] 40%
업종정보	업종코드 (업태명)	701400(부동산업및임대업) 630201(운수업) 514950(도매업및소매업) 252901(제조업)	519113(도매) 514911(도·소매) 252901(제조업)
	주업종	252901 (제조업/플라스틱성형용기제조업)	252901 (제조업/플라스틱탱크)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2232 (포장용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32 (포장용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주생산품		IBC 탱크	IBC 탱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별지 3]

o 매출액 현황



※ 작성기준 : 표준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제6호증 1·2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별지 4]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2

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끝.